

2002년 비축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

대한석유협회

2002년 비축의무고시 개정안에 대한 폐업계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특히, 동 고시 개정안중 유종별 비축의무부과는 정유사에 추가부담을 지우고 IEA기준이나 외국의 사례와도 맞지 않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여 주시고, 비축일수의 상향 조정도 미미한 내수증가율 및 현 정유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시어 현행유지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.

1. 유종별 비축의무 부과 (제2조 2항)

- 국내 비축제도 도입이후 정부는 IEA기준에 따라 유종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비축의무를 관리하고 있으나 급변 개정고시(안)처럼 민생유종의 수급 안정을 위한 휘발유, 등유, LPG 유종별 비축의무 추진은 정유사의 추가부담을 초래하여 수급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, IEA 기준이나 외국의 사례와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.
- 현행의 총량관리 비축정책이 정유사가 비축하고 있는 원유는 그 성상 및 정제시설에 따라 제품의 수율이 각각 다르고, 위기시에는 재가공을 통해 다른 유종으로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기초하고 있음을 감안하면, 유종별 비축 관리로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.
- 특정 유종에 대한 인위적인 제품생산 조절이 불가능한 정유사의 경우, 휘발유, 등유, LPG 등 주요 유종에 대해 각각의 비축의무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품 수율을 고려하여 정제량을 늘리거나, 부족한 제품을 수입하여 비축하여야 하는 등 비축의무자의 부담이 대폭 증가되어, 유종별 비축관리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.
- 유종별 비축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제품재고량 증가 또는 내수판매량 감축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비축의무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, 오히려 내수시장에서

수급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.

- 유종별로 비축의무량을 관리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가 없으며, IEA의 비축물량 산정기준도 원유와 제품을 총괄하는 총량관리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등 제품별 비축의무부과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행의 총량관리 정책이 유지되어야 함.
- 계절별 수요차이가 커서 비수기에도 비축의무 준수를 위해 재고비축을 해야하는 불합리가 발생함.
 - 대상제품의 성수기 내수물량은 비수기 대비 등유13배, 프로판 2배 수준임.

2001년 내수실적

(단위:MB)

구분	1월	7월	8월	12월	합계	일평균
등유	12,501	964	2,517	9,723	69,909	5,826
프로판	5,537	3,119	2,713	4,884	46,920	3,910

- 특히 LPG의 경우 정유사 수급구조상 수요대비 대비 생산 부족물량은 LPG 수입사로부터 구매하고 있어 다른 유종에 비해 저장시설을 많이 보유할 필요가 없는 실정임.
 - LPG 저장시설은 제품특성을 고려 고압에 견딜 수 있는 특수탱크로 일반탱크에 비해 건설비가 대폭 증가되고 그 동안의 수요증가를 고려한 정제시설 확충으로 공장내 유희부지가 없는 실정이며 공장 소재지의 도시화로 공장인근 지역에도 탱크건설을 위한 부지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.
 - 이러한 LPG 수급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정유사는 공동으로 LPG 수입사를 설립하였으며 수입

사의 LPG 저장능력은 85만톤으로 국내수요의 약 43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이며 민간업자의 저장시설 이외에도 석유공사의 저장능력 36만톤을 포함할 경우 국내 LPG 저장능력은 약 65일 수준임.

- 따라서 현재의 System하에서 비상시 비축의무를 이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, 만약 수입업자처럼 일시에 물량을 비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저장시설 건설이 요구되며, 이는 정제업자에게 LPG 수입업 참여를 유도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.
- 따라서 일부 유종의 비상시 위기대응능력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비축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비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.
 - 일례로 향후 정부 비축은 등유 위주로 변경하고 현행 LPG 내수의 약 18일 수준에 불과한 LPG 저장시설을 수입사의 저장일수 수준인 43일 수준으로 LPG 비축기지를 추가 건설하여 민생유종의 비상수급 대비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임.

2. 자료제출 기한 단축 (제3조1항)

- 석유비축의무부과에 필요한 동 자료는 석유수급상황기록부 등의 형태로 제출되고 있으며 현재도 석유공사가 이를 기초로 직접 산정하고 있어 업무효율화 측면에서도 해당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.
 - 공사가 업체별 비축의무량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여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.



3. 과징금 변경 (8조2항 및 3항)

- 비축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비축의무 미이행에 따른 혜택이 정상적으로 비축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보다 크지 않도록 과징금의 상향조정은 필요함.
- 개정안의 과징금 산식은 미달물량에 대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대비 너무 과도한 것이므로 벌과금 성격을 고려하여 시중은행 연체이자율 혹은 가산금리(상한 5%)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.
- 가산을 5%적용시 현행 과징금 산정방식 대비 추가 과징금 부과금액이 약 3배가 됨.
- 또한 경감폭의 확대 논의는 경감 원칙에 대한 투명한 기준마련이 선행된 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.

4. 비축일수 상향 (별표3)

- '93년 비축제도 도입시점 정부의 비축목표는 '97년에 IEA 권고 수준인 총 90일분을 달성하는 것으로 이 중 30일은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현재 민간부문은 38일로 당초 계획을 달성하고 있음.
- 국내 석유제품의 수요는 정부의 환경중시 정책, 에너지원간 경쟁 등으로 과거 고도 성장기와 달리 정체상태에 있고 향후에도 급격한 증가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.
- 내수가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축의무량의 증

가는 비축의무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므로, 비축의무일수를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함.

- 정부는 예산상 제약으로 정부비축 60일 목표가 조기 달성되기 어려워 석유사업법상 민간비축 목표를 60일분으로 확대하고 매년 국내·외 경제상황 및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·고시해 오고 있음.
- 정부는 민간비축목표를 60일분으로 확대하는 대신 민간부문의 비축부담을 완화시키고, 순수비축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'97년도부터 부과금면제 비축의무량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.
- 정유사의 '01년도 경영실적을 보면, 정제마진의 악화, 경제전반에 걸친 경기침체 지속으로 석유소비 감소, 석유수입사의 활동증가와 내수시장 공급 과잉등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정유5사의 경영실적은 $\Delta 2,377$ 억원으로 2000년도($\Delta 2,194$ 억원)보다 적자가 심화 되었으며, 정유부문의 손익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따라서 민간비축 재고일수의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정부의 정책상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운영재고가 아닌 부과금면제 비축량의 조정을 통해 현재 경영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함.
- 운영재고는 정유사의 정상적인 내수판매를 위해 필요한 물량으로 '93년 정부가 25일로 운영재고를 규정한 바 있고 현재도 이와 유사한 수준인 26일분을 유지중이며, 현재 국내 석유수요가 정체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, 증가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. ☹